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2504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2504의 기초 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2504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2504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 원(1년 만기 기준) 단 한번 납입으로 끝 : 1만 원(1년 만기 기준) 초과 보험료에 대하여는 체신관서가 지원하여 드립니다.
-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수술비를 정액으로 보장합니다.
- 만기급부금(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지급으로 납입보험료 100% 환급해 드립니다.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1년 만기	만15~65세	일시납	일시납
3년 만기			

■ 가입한도 : 1구좌 고정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보험계약자의 범위 :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① 상품의 구성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선택)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선택)
-----	--

②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유족위로금	자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재해입원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재해수술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 10만원 2종수술 : 20만원 3종수술 : 30만원 4종수술 : 50만원 5종수술 : 100만원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만기보험금의 경우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의자(사망시 수의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당 진단서	비고
만기시	○	○		
사망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입원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술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약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 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확인 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2504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 분	남자	여자
예정 재해 사망률	0.000438	0.000218
예정 재해 입원율	0.508449	0.690688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2504는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체국보험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 1년 만기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일시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3개월	34,900	22,300	30,900	19,600
6개월	34,900	18,200	30,900	16,400
9개월	34,900	14,100	30,900	13,200
1년	34,900	10,000	30,900	10,000

주) 체신관서가 일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3년 만기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일시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90,800	61,500	79,100	54,400
2년	90,800	46,000	79,100	42,400
3년	90,800	30,000	79,100	30,000

주) 체신관서가 일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